



## 2021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	2022. 01. 11.
위원정수 : 9명	재적위원 : 9명

1. 일 시 : 2022년 01월 18일(화) 13:00
2. 장 소 : 대학본관 2층 소회의실
3. 참석위원 : 6 명(위원장 : 김경화, 위 원 : 조정우, 박철우, 이창섭, 허성호, 인효준)
4. 불참위원 : 3 명(위원 : 이성율, 이승원, 전유진)
5. 참석교직원 : 0 명
6. 안 건

제1호 의안)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 심의

제2호 의안)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

제3호 의안)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 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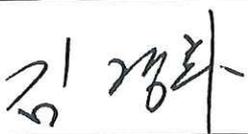
제4호 의안)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처리원칙(안) 심의

제5호 의안)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 심의

제6호 의안)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 간서명 추천

### 7. 회의내용

#### 가. 개회

	김경화 위원장	박철우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		

- 김경화 위원장이 9명 재적위원 중 6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, 2021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건 심의

제1호 의안)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 심의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.
  - o 상위법 「고등교육법 제11조」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
  - o 학생위원 선출 내용 규정 보완

##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변경사유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등록금의 책정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등록금 면제·감액에 관한 사항	상위법(고등교육법 제11조)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1. ~ 4. (생략) ② 교직원위원은 기획처장, 사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,	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다만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,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</u>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교직원위원은 기획처장, 사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,	상위법(고등교육법 제11조)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
<간서명>	김경화 위원장	박철우 위원
		
		조정우 위원
		

현행	개정안	변경사유
<p>총학생부회장, 대의원의장 동창회위원은 총동창회회장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간사는 기획부장으로 하며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</p> <p>부칙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&lt;신설&gt;</p>	<p>총학생부회장, 대의원의장 동창회위원은 총동창회회장으로 한다. <u>다만, 학생회가</u>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위원은 대의원회의장 및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 2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간사 및 서기는 기획부 소속 직원으로 보한다.</p> <p>부칙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이 개정 규정은 2022.02.01.부터 시행한다.</p>	<p>학생위원 선출 내용 규정 보완</p>

- 허성호 위원이 차기학생회 미출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질의하다.
- 김경화 위원장이 지난 2021년 11월 차기학생회 출범 불발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, 본 규정 현행 학생위원은 학생회장, 학생부회장 및 대의원회의장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선출과정 상 규정과 상충되므로 이에 본 규정 개정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.
- 김경화 위원장이 학생회회칙 등 관련 근거 규정에 학생회 미출범에 따른 대의원회 권한 대행에 대한 개정 보완 검토를 요청하다.
- 박철우 위원이 김경화 위원장의 의견을 재청하다.
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제2, 3호 의안)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정(안) 및 2022회계연도 교

	김경화 위원장	박철우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박철우	조정우

비회계 본예산(안) 심의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.
  - o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 자금예산서(안)
  - o 등록금회계 수입/지출 주요 변동사항
  - o 비등록금회계 수입/지출 주요 변동사항
- 이창섭 위원이 2021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명예·조기퇴직 금액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다.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퇴직기금(비등록금회계) 및 등록금회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명예·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.
- 허성호 위원이 관리운영비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2.6억원 감소 원인에 대해 질의하다.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고정관리 시설관리 유지 비용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통신료, 소모품비, 전기료 및 수도료와 같은 고정유지비 등이 코로나-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.
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다음 안건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.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.
  - o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 편성 관련 최근 동향/전망 및 편성방향 취지 설명
  - o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자금예산서(안)
  - o 등록금회계 수입/지출 주요 변동사항
  - o 비등록금회계 수입/지출 주요 변동사항
- 박철우 위원이 최근 3년간 등록금회계 보수·관리운영비·연구학생경비 추이에 대해 질의하다.

	김경화 위원장	박철우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박철우	조정우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0-2021 회계연도 구간에는 각 관별 예산계정마다 13억 원 정도 감액이 이루어졌고, 2021-2022 회계연도 구간에는 보수를 제외한 예산계정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(안)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**제4호 의안)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(안) 심의**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잉여금 처리 원칙(안) 수립 취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.
  - 사립학교법 제32조의3(이월금) 및 이월금 정의와 종류
  - 등록금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
    - ① 등록금회계 예산을 편성,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 노력함
    -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, 사업취소, 불용액 등의 교비회계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 중 장학금, 연구학생경비, 도서구입 순으로 우선 편성함
  -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
    - ① 비등록금회계 예산을 편성,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 노력함
    -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, 사업취소, 불용액 등의 교비회계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 중 교직원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에 우선 편성함
- 별다른 질의가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 동의하에 제4호 의안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: 6, 반대: 0)

**제5호 의안)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 심의**

-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0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에 대하여 설명하다.

	김경화 위원장	박철우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박철우	조정우

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7조(법인부담금)에 따른 법적 근거
  - 학교부담 시 비등록금회계 우선 편성 준수사항 명시
  -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 절차 명시 (대학평의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후, 이사회에서의 심사·의결로 확정)
  - 동의학원 發 법정부담전입금 최근 추이
  - 당해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규모
-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,952,364 천원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예정액 105,000 천원을 제외한 1,847,364 천원을 교비회계로 편성하며, 이를 학교부담신청금액으로 요청하다.
  -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(안) 심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 (찬성: 6, 반대: 0)

**제6호 의안)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**

- 김경화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2제2항에 의거한 간서명 대표위원을 추천받다.
- 허성호 위원이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김경화 위원장, 박철우 위원, 조정우 위원을 추천하다.
- 전 위원이 간서명에 대하여 동의하다. (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**다. 폐 회**

- 김경화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

	김경화 위원장	박철우 위원	조정우 위원
<간서명>	김경화	박철우	조정우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22. 01. 18.

위 원 장 : 김 경 화 (인)   
위 원 : 조 정 우 (인)   
위 원 : 박 철 우 (인)   
위 원 : 이 창 섭 (인)   
위 원 : 허 성 호 (인)   
위 원 : 이 성 울 (인)  
위 원 : 인 호 준 (인)   
위 원 : 전 유 진 (인)  
위 원 : 이 승 원 (인)



---

위와 같이 심의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2022. 01. 18.

동의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

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권 위 하 위 없 음 을 증 명 합 니 다  
년 월

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

